

2023년 『청년취업 2000 사업』 참여기업 모집공고

청년층 미취업자의 고용창출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23년 「청년취업 2000 사업」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23. 1. 9.

전 주 시 장

1. 공고개요

- 사업기간 : 2023. 1. ~ 12.
- 사업규모 : 25명
- 지원대상
 - 참여기업 : 전주시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업으로 상시고용인원 외 추가채용 계획이 있고, 월 급여액을 최저임금 이상 지급 가능한 기업
 - ※ 전년도 참여기업은 기존 협약체결 당시의 상시근로자 수 이상일 경우 사업참여 가능
 - 참 여 자 :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주시이고,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자 또는 참여기업에서 신청일 이전 6개월 미만 근무한 자
- 지원내용
 - 참여기업 : 청년 채용 1인당 월 70만원씩 12개월간 지원
 - 참 여 자 : 장려금 300만원 지원(6개월, 12개월, 24개월 경과 시 100만원 지급)
- 추진일정

참여기업 공개모집	참여기업·근로자 심사 및 확정	약정 및 협약 체결	사업추진
'23. 1. 9. ~ 1. 20.	'23. 1. 31.한	'23. 2. 3.한	'23. 2월 이후

2. 신청자격

○ **참여기업** : 전주시 소재 *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외 정규직 채용계획이 있고,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포함한 급여액을 최저임금 이상 지급 가능한 기업

- 비영리법인·단체도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기업에 포함

- *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참여 직전 월말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하며, '22년도 참여기업은 협약체결 당시의 상시근로자 수 이상일 경우 당해연도 사업참여 가능

※ 신청자격 제외기업

1) 소비 향락업 등 업종

① 『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』 제 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조에서 정하는 업종*

* 일반유흥 주점업, 무도유흥 주점업, 기타 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, 무도장 운영업 등

② 『청소년 보호법』 제 2조 제 5호의 '청소년 유해업소', 『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』 제 2조, 『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』 제 2조에 해당하는 업종*

* 단란주점, 유흥주점, 노래연습장업, 비디오감상실업, 무도장업, 복권발행업 등

2) 국가 및 공공기관 등

① 『정부조직법』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『지방자치법』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

② 『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교육행정기관

③ 『국회법』에 따른 국회, 『법원조직법』에 따른 각급 법원, 『헌법재판소법』에 따른 헌법재판소, 『선거관리위원회법』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, 『감사원법』에 따른 감사원

④ 『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공공기관 및 『지방공기업법』에 따른 지방공사·지방공단

⑤ 『초·중등교육법』, 『고등교육법』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

3)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,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

4) 『근로기준법』 제 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

* (확인방법) 고용노동부 누리집 > 정보공개 >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

* (제외기간) 명단 공개기간 내에 신규 채용한 청년은 지원 불가

5) 고용보험료 체납기업

6) 3개월 미만의 계절적·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(예,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)

- 7) 학원(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속소에 관한 법률」 및 「도로교통법」에 의한 학원)
- 8) 숙박·음식업종 사업체(다만, 호텔업·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)
- 9) 『산업안전보건법』 제 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
* (확인방법) 고용노동부 누리집 > 사전정보 공표목록 > 산재예방산재보상 >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
- 10) 『고용보험법 시행령』 제 56조 제 2항(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)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(최대 12개월)에 있는 사업주
- 11) 청년취업자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
- 12)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청년 취업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
- 13) 청년 취업 신청자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
- 14) 청년의 취업 근무 중 다른 근로자를 부당하게 인위적으로 감원하거나 지원금 등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
- 15) 청년 취업지원사업 종료 후 사업참여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
- 16) 전년도 중도탈락률이 50% 초과 기업 또는 최근 3년 이상 연속 참여하였음에도 3년 연속 정규직 전환이 없는 기업
- 17) 정부 및 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기업
- 18) 기타 청년 취업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

○ 참 여 자 :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주시이고,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자 또는 참여기업에서 신청일 이전 6개월 미만 근무한 자

- 보조금 지원 중 타 시·군 주소 이전 시 지원 중단
-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자, 계약직·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자,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취업중인 자로 봄

※ 신청자격 제외대상

- ① 사업주(법인의 경우 대표이사)의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·인척 관계에 있는 자
-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
- 다만,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비전문취업(F-9),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 이민자(F-6), 방문취업(H-2)는 가능
- ③ 청년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서, 본인이 원하여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
※ 다만 청년이 원하여 해지된 경우라도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참여할 수 있음
- ④ 청년 취업신청일 이전, 6개월 이상 청년취업채용 예정기업에서 근무한 자

- 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취업자로 채용되었던 자
- ⑥ 정부 및 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자
- ⑦ 휴학생, 재학생
 - 다만,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최종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로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자, 야간학교 재학 중인 자는 참여 가능
- ⑧ 기타 청년 취업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

3. 지원한도

- 실시기업은 당해연도 청년취업 지원협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실시기업 상시근로자수의 40% 이내(소수점 이하는 절상)에서 채용 가능
- 청년취업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자는 정부 등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 불가(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경우 청년취업 지원을 중단하며 향후 청년취업지원 및 신중년취업지원 참여 자격 배제)
- 단, 본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근로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고용장려금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청년취업장려금 포기서약서 작성 시 참여 가능

4. 지원내용

- 수습기간 중 지원금 : 청년 1인당 3개월 동안 월 70만원 지원
 - 조기 정규직 전환 특례 : 당초 약정한 수습기간을 단축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실무수습 잔여기간과 정규직 전환 지원기간 9개월을 포함하여 총 12개월간 지원 가능
- 정규직 전환 시 지원금 : 수습기간 종료 이후 청년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시 월 70만원 9개월 추가 지원
 -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실무수습 기간 만료일 전 15일 이내에 정규직으로 채용하여야 함

5. 보조금 지급 절차 및 의무 고용 이행상황 등

○ 보조금 지급 방법

- 기업이 취업자 임금을 매월 정기지급일에 지급하고 월 단위로 익월 5일 까지 신청하면 근무상황 등을 확인 후 지원금 지급(매월 신청)
(예시) 2023년 3월 급여지급분에 대한 2023년 4월 5일한 교부신청
- ※ 지원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 퇴사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불가
- ※ 4대 보험 체납 시 3개월 이내 완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중지

○ 보조금 지원기업 의무 고용 이행상황

- 보조금 지원 기간 동안 ‘협약체결 직전 3개월 평균 상시근로자수 또는 협약체결 당시 상시 근로자수’(취업참여자 미포함)를 유지하고, 보조금 지원대상 신규고용인 유지
- 상기 상시근로자 수의 감소가 있는 경우 추가 채용 전까지 보조금 지급을 보류하며, 3개월 이상 인원보충이 없을 경우 당해년도 지원중단
- ※ 인원유지 여부는 지원금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 목록으로 확인
- ※ 보조금 지원대상 신규고용인 유지의무 위반시 타 신규고용인으로 1회에 한해 대체충원 신청가능(단,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지급가능)

6.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○ 신청기간 : 2022. 1. 9.(월) 09:00 ~ 1. 20.(금) 18:00

○ 신청방법 :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

(방문접수) 점심시간(12:00~13:00) 제외, 기간 중 평일

(등기우편) '23. 1. 20.(금)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

-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처 : 전주시청 청년정책과 청년일자리팀
(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, 대우빌딩 8층)

○ 제출서류

[필수서류]

- 1) 청년취업 채용신청서(기업용) 1부.
- 2) 청년취업 운영계획서(기업용) 1부.
- 3) 청년취업 지원신청서(참여자용) 1부.
- 4)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(기업용, 개인용) 각 1부.
- 5) 청년취업 선발자 명단통보서(기업용) 1부.
- 6) 청년채용약정서 1부.
- 7) 표준근로계약서 1부.
- 8) 청년취업지원 협약서 2부.
- 9) 정규직명단 통보서(정규직으로 바로 채용시) 1부.
- 10) 사업자등록증 1부.
- 11)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.
- 12) 고용보험가입자목록('22년 10~12월 — 매월 말일 기준) 1부.
- 13) 청년취업자 주민등록등본 1부.

[선택사항]-증빙서류 제출시 가점처리(2개이상 항목 제출 가능)

- 1) 최근2년간 고용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선정기업
- 2) 도·시군 취업박람회 참여기업
- 3) 전년도 고용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교육생 채용기업
- 4) 고용부 청년친화 강소기업
- 5)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

7. 기타 유의사항

- 해당사업의 신청기업은 사전에 공고문 내용을 숙지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,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부정확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에 대한 일체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
- 채용기업은 청년취업자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, 이후 발생하는 모든 권리·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귀속함
- 청년취업자 채용기업은 해당 시·군과 「청년취업 지원협약」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함

- 청년취업자 채용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보조금 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, 기 지원금은 회수할 수 있음
 -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를 퇴직시키고 동일기업에 청년취업자를 채용코자 하는 경우
 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기업에 선정되었거나 청년취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- 부정 신청 또는 수급에 따른 청년취업 신규채용 금지기간 중 채용된 취업자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기지급된 지원금은 반납·환수함

〈「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상 벌칙규정〉

- 제40조 :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- 제41조 :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 징역, 2천만원 이하 벌금

8. 문의처

-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전주시청 청년정책과 청년일자리팀 (☎063-281-515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